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438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성옥(국선)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4.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4. 3. 21. 0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2024.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4. 5. 3.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부지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인데, 상호간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4. 2.경 사무실 부지를 2024. 3. 14.까지 비우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잠금장치를 해도 무방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협동조합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열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잠금장치를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④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법익과의 비교형량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승호 _____